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비자에 대한 이륜자동차 번호 고지 의무화 >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3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2203933)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소비자에 대한 이륜자동차 번호 고지 의무화(안 제19조의5 및 제51조 제1항제9호의4 신설)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3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9
1) 국토교통부	9
2) 라이더유니온	9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220393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배숙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증가로 이륜자동차를 통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증가했지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해 이륜자동차가 유발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호 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이륜자동차를 통한 이윤획득을 차단하는 한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비자에 대한 이륜자동차 번호 고지 의무화(안 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으로 하여금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번호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의3. (생략)	<u>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의 번호 고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u>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과태료) ① ----- ----- -----. 1. ~ 9의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10. ~ 14. (생략) ② (생략)	9의4.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소비자 에게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고지하 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 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최근 4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매년 16,000건 이상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1,900명이 사망하였으며,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¹⁾ 결과에 따르면 배달대행 종사자는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약 25%에 달하였고, 이는 연평균 1.7회 사고·부상을 경험하였다는 것임.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2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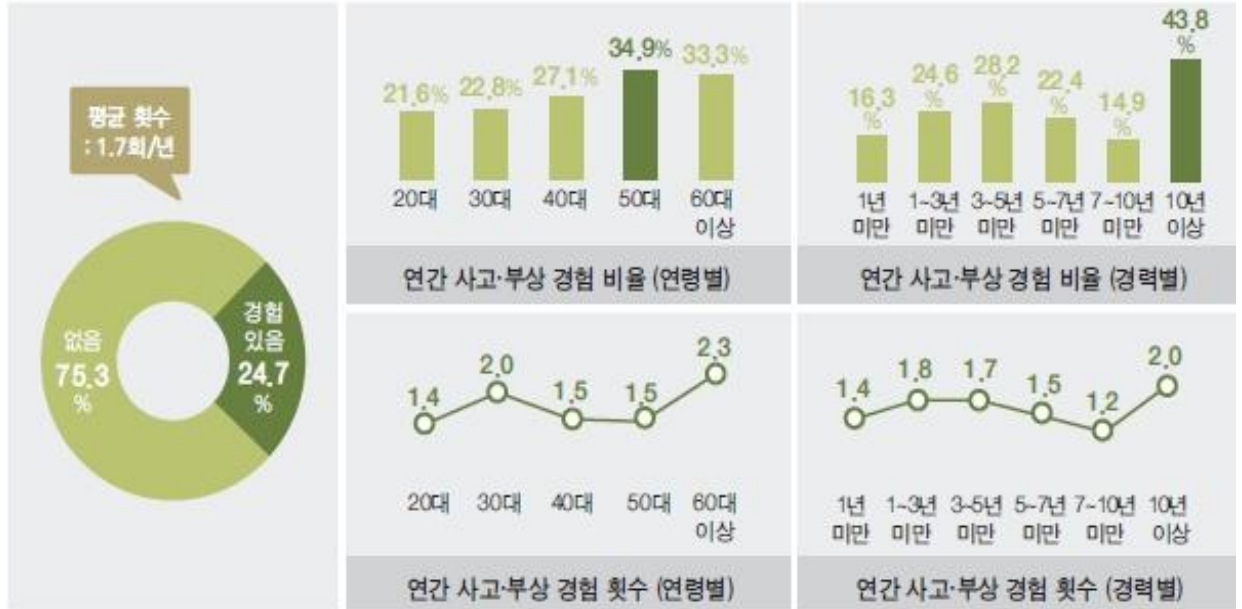
【 최근 4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전체	사고건수(건)	209,654	203,130	196,836	198,296
	사망자수(명)	3,081	2,916	2,735	2,551
	부상자수(명)	306,194	291,608	281,803	283,799
이륜차*	사고건수(건)	21,258	20,598	18,295	16,567
	사망자수(명)	525	459	484	392
	부상자수(명)	27,348	26,617	23,469	21,318

* 사륜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배달대행종사자의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



【 그림 3-35 】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비율 및 횟수 (배달대행 종사자)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2

또한, 이륜차 번호판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륜차의 법규위반이 35만 건 이상 발생하였고²⁾,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익제보단(TS 이륜차 서포터즈)을 운영하여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은 결과 약 26만 8천여건의 제보가 이루어졌으며,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에 따르면 27.4%에 달하는 답변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부상의 원인으로 답변하는 등 이륜차 이용한 배달대행 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이륜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임.

【 2018~2022 이륜차 법규위반 건수 】

[표 1-4] 연도별 법규위반 건수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이륜차 법규위반 건수	247,039	280,993	356,344	413,605	351,685	9.2%
전체 법규위반 건수	15,984,584	16,432,816	16,120,914	17,913,306	22,362,563	8.8%

*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보고서

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2024)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이륜차 법규 위반 공익제보실적 】

구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번호판 가림·훼손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유턴·횡단·후진 위반	합계
제보건수	130,829	41,954	35,000	25,652	14,642	12,192	7,647	267,916
비율	48.8%	15.7%	13.1%	9.6%	5.5%	4.6%	2.9%	100%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이륜차 난폭운전‘꼼짝마’…TS 공익제보단 26만건 신고, 2024.4.9.

2)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2024.8.30. p.5

【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부상 원인 조사 결과 】



【 그림 3-36 】배달대행 업무 중 사고·부상 원인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2

특히, 위 공익제보실적에 따르면 번호판 가림·훼손 등에 대한 제보건수가 14,642건에 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운영 결과 총 25,581건을 단속하였는데 그 중 이륜차 번호판 관련 불법건수는 767건에 달하는 등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 또는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2023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 등록번호판 등 위반 】

유형별 세부 단속결과 -3) 등록번호판 등 위반

(단위 : 건)

구분	번호판 식별 불가	봉인 훼손 및 탈락	번호판 훼손	합계
자동차	619	495	328	1,442
이륜차	384	295	88	767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23년 불법차 25,581대 단속“등화장치”위반 가장 많아...’, 2024.2.4.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련 법규 위반은 신호위반 등 또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게 이륜자동차 번호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번호판 관련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 이륜자동차 번호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번호판 관련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모색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자동차관리법」³⁾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3)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련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거나 공익제보단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이륜차 번호판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는 배달용 이륜차 법규위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4) 참고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에 대한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번호판 부착 의무의 경우 자동차는 위반 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수준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법률이 2025.3.15. 시행 예정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는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3. 15.]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표 7-1] 배달용 이륜차 법규위반 방지 추진안

년도	주요내용
1단계	- 후면번호판 개선 및 도입 효과 모니터링
2단계	- 배달용 이륜차 대상 전면에 이륜차번호 스티커 부착 (현행 또는 신규 이륜차번호) 시범 운영 * 배달용 이륜차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 필요

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2024)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 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종사자의 번호판 정상 부착으로 이어질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개선효과도 의문이고, 오히려 번호 제공으로 인한 종사자 개인정보 노출 소지 및 빠른 배송의 부담감으로 과속 운전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개정안의 실익이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라이더유니온

이륜자동차 번호를 제공하여 어떠한 개선효과를 갖는지 의문이 드며, 현행법에도 번호판 미부착, 가림 등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은 반대하지 않으나 일부 위반사항을 이유로 전체 배달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반대함.⁵⁾

5) 한편, 일부 업체는 이륜자동차 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소지가 있어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80